

◎漁業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

(略称) 韓国との漁業協定

平成十年十一月二十八日	鹿児島で署名
平成十年十二月十一日	国会承認
平成十一年一月二十日	批准の閣議決定
平成十一年一月二十二日	ソウルで批准書交換
平成十一年一月二十二日	公布及び告示

(条約第三号及び外務省告示第五五号)

目次	ページ
前文	一〇四一
第一条 適用範囲	一〇四一
第二条 相互入会いの許可制	一〇四一
第三条 操業条件等の決定	一〇四二
第四条 入漁許可手続	一〇四二
第五条 相手国の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自国漁船の操業	一〇四三
第六条 自国の排他的経済水域において相手国漁船に対してとる措置	一〇四三
第七条 漁業に関する王権的権利を行使する水域の境界線	一〇四四
第八条 相互入会い措置をとらない水域	一〇四五
第九条 相互入会い措置をとらない水域の扱い	一〇四五
第十一条 資源管理についての協力	一〇四七

第十一條 航行、操業の安全等	一〇四七
第十二條 日韓漁業共同委員会	一〇四七
第十三條 紛争解決手続	一〇四八
第十四條 附屬書と協定の関係	一〇四九
第十五條 國際法上の問題との関係	一〇四九
第十六條 協定の批准、発効及び終了	一〇五〇
第十七条 前の漁業協定の失効	一〇五〇
末文	一〇五〇
附屬書 I	一〇五一
附屬書 II	一〇五三
○合意された議事録	一〇五四
○大韓民国の国民及び漁船に対する漁獲割当量に関する日本側書簡	一〇五五
○協定の規定に反する操業が行われた場合の措置に関する書簡	一〇五六
日本側書簡	一〇五六
韓國側書簡	一〇五七

漁業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

日本国及び大韓民国は、

海洋生物資源の合理的な保存及び管理並びに最適利用の重要性を認識し、

千九百六十五年六月二十一日に東京で署名された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漁業に関する協定を基礎として維持された両国の間の漁業の分野における協力関係の伝統を想起し、

両国が千九百八十二年十一月十日に作成された海洋法に関する国際連合条約(以下「国連海洋法条約」とする)の締約国であることを留意し、

国連海洋法条約を基礎として、両国間に新しい漁業秩序を確立し、両国間の漁業の分野における協力関係を更に発展させるところを希望し、

次のとおり協定した。

第一条

適用範囲

「」の規定は、日本国と大韓民国の排他的經濟水域(以下「協定水域」とする)に適用する。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협정수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 1 조

第一条

相互入会
制の許可

各締約国は、互恵の原則に立脚して、「」の規定及び本国の関係法令に従い、自國の排他的經濟水域において他方の締約国の国民及び漁船が漁獲を行つけるを許可する。

각 협약국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협정 및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타방제국 국민 및 어선이 어획하는 것을 허가한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관리 및 죄적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55년 6월 22일 도오쿄오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기초로 유지되어 왔던 양국간 어업분야에 있어서의 협력관계의 전통을 상기하고、

양국이 1982년 12월 10일 작성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국제연합해양법 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임을 유념하고、

국제연합해양법협약에 기초하여, 양국간 새로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양국간에 어업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을 화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2 조

第一条

韓国との漁業協定

第三条

操業条件等の決定

1 各締約国は、自国の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他方の締約国の国民及び漁船の漁獲が認められる魚種、漁獲量当量、操業区域その他の操業に関する具体的な条件を毎年決定し、その決定を他方の締約国に書面により通報する。

2 各締約国は、1の決定を行つた当たり、第十一條の規定に基づいて設置される日韓漁業共同委員会の協議の結果を尊重し、及び自国の排他的経游水域における海洋生物資源の状態、自国の漁獲能力、相互入会の状況その他の関係する要因を考慮する。

第四条

入漁許可手続

1 各締約国の権限のある当局は、他方の締約国からの前条に規定する決定について書面による通報を受けた後、他方の締約国の排他的経游水域において漁獲を行つことを希望する四國の国民及び漁船に対する許可証の発給を他方の締約国の権限のある当局に申請する。当該他方の締約国の権限のある当局は、1の許可証を発給する。

2 許可を受けた漁船は、許可証を操舵室の見やすい場所に掲示し、及び漁船の標識を明確に表示して操業する。

3 各締約国の権限のある当局は、許可証の申請及び発給、漁獲実績に関する報告、漁船の標識並びに操業田誌の記載に関する規則を含む手続規則を他方の締約国の権限のある当局に書面により通報する。

4 各締約国の権限のある当局は、入漁料及び許可証の発給に関する妥当な料金を徴収する。
1. 각 체약국은 자국의 베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의 어획이 인정되는 어종·어획량·당량·조업구역 및 기타 조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매년 결정하고, 이 결정을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 ○ |

제 3 조

1. 각 체약국은 자국의 베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의 어획이 인정되는 어종·어획량·당량·조업구역 및 기타 조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매년 결정하고, 이 결정을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2. 각 체약국은 제1항의 결정을 힘에 있어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한 일 어업 공동위원회의 협의결과를 존중하고, 자국의 베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상태, 자국의 어획능력, 상호입어의 상황 및 기타 관련요소를 고려한다.

제 4 조

1.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제3조에서 규정하는 결정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통보를 받은 후, 타방체약국의 베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한 허가증 발급을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신청한다. 해당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 및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 허가증을 발급한다.

2. 허가를 받은 어선은 허가증을 조타실의 보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어선의 표지를 명확히 표시하여 조업한다.

3.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허가증의 신청 및 발급, 어획실적에 관한 보고, 어선의 표지 및 조업일지의 기재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 절차규칙을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4.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입어료 및 허가증 발급에 관한 타당한 요금을 정수할 수 있다.

第五条

相手国の
排他的經濟
水域における自
國漁船の操業

1 各締約国の国民及び漁船は、他方の締約国の排他的經濟水域において漁獲を行うときは、(1)の規定及び漁業に関する他方の締約国の関係法令を遵守する。

2 各締約国は、自国の国民及び漁船が他方の締約国の排他的經濟水域において漁獲を行うときは、(1)の規定及び漁業に関する他方の締約国の関係法令を遵守する。

自国の
排他的經濟
水域における
自國漁船の操業

1 各締約国は、他方の締約国の国民及び漁船が自国の排他的經濟水域において漁獲を行うときは、(1)の規定及び漁業に関する他方の締約国が決定する他方の締約国の排他的經濟水域における操業に関する具体的な条件及び(2)の規定の規定を遵守する。国際法に従い、自国の排他的經濟水域において必要な措置をとる。(1)の措置は、他方の締約国の排他的經濟水域における自国の国民及び漁船に対する臨検、停船その他の取締りを含まない。

第六条

自國の
排他的經濟
水域における
自國漁船に
対してと
る措置

1 各締約国は、自国の国民及び漁船が他方の締約国の排他的經濟水域において漁獲を行うときは、(1)の規定及び漁業に関する他方の締約国が決定する他方の締約国の排他的經濟水域における操業に関する具体的な条件及び(2)の規定の規定を遵守する。国際法に従い、自国の排他的經濟水域において必要な措置をとる。(1)の措置は、他方の締約国の排他的經濟水域における自国の国民及び漁船に対する臨検、停船その他の取締りを含まない。

3 拿捕され又は抑留された漁船及びその乗組員は、適切な担保金又はその提供を保証する書面を提供した後に速やかに釋放される。

4 各締約国は、漁業に関する自国の関係法令に定める海洋生物資源の保存措置その他の条件を他方の締約国に連絡なく通報する。

第 5 章

1. 각 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타방제약국의 베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할 때에는 이 협정 및 어업에 관한 타방제약국의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2. 각 체약국은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이 타방제약국의 베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타방제약국이 결정하는 타방제약국의 베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과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조치는 타방제약국의 베타적경제수역에서의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한 임금·정선 및 기타의 단속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1. 각 체약국은 타방제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자국의 베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국이 결정하는 자국의 베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과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국제법에 따라 자국의 베타적경제수역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각 체약국의 권리있는 당국은 제1항의 조치로서 타방제약국의 어선 및 그 승무원을 나포 또는 억류한 경우에는 취하여전 조치 및 그 후 부파된 벌에 관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제약국에 신속히 통보한다.

3. 나포 또는 억류된 어선 및 그 승무원은 적절한 납보금 또는 그 세금을 보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신속히 석방된다.

4. 각 체약국은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조치 및 기타 조건을 타방제약국에 자체없이 통보한다.

韓国との漁業協定

第七条

漁業に閑する主権的権利を行使する境界の水域

各締約国は、次の点を順次に直線により結ぶ線より自國側の協定水域において漁業に関する主権的権利を行使するものとし、第一條から前条までの規定の適用上あるの水域を自国の排他的経済水域とみなす。

- (1) 北緯三十一度五十七・〇分、東経百一十七度四十一・一分の点
- (2) 北緯三十一度五十七・五分、東経百二十七度四十一・九分の点
- (3) 北緯三十一度一・三分、東経百一十七度四十四・〇分の点
- (4) 北緯三十三度八・七分、東経百一十七度四十八・三分の点
- (5) 北緯三十三度十三・七分、東経百一十七度五十一・六分の点
- (6) 北緯三十三度十六・二分、東経百一十七度五十二・三分の点
- (7) 北緯三十三度四十五・一分、東経百二十八度二十一・七分の点
- (8) 北緯三十三度四十七・四分、東経百二十八度二十五・五分の点
- (9) 北緯三十三度五十五・四分、東経百二十八度二十六・一分の点
- (10) 北緯三十四度八・二分、東経百二十八度四十一・二分の点
- (11) 北緯三十四度十三・〇分、東経百二十八度四十七・六分の点
- (12) 北緯三十四度十八・〇分、東経百二十八度五十二・八分の点
- (13) 北緯三十四度十八・五分、東経百二十八度五十三・三分の点
- (14) 北緯三十四度二十四・五分、東経百二十八度五十七・三分の点
- (15) 北緯三十四度二十七・六分、東経百二十八度五十九・四分の点
- (16) 北緯三十四度二十九・一分、東経百二十九度〇・二分の点
- (17) 北緯三十四度三十一・一分、東経百二十九度〇・八分の点
- (18) 北緯三十四度三十一・六分、東経百二十九度〇・八分の点
- (19) 北緯三十四度四十一・三分、東経百二十九度三・一分の点
- (20) 北緯三十四度四十九・七分、東経百二十九度十二・一分の点
- (21) 北緯三十四度五十・六分、東経百二十九度十三・〇分の点
- (22) 北緯三十四度五十二・四分、東経百二十九度十五・八分の点
- (23) 北緯三十四度五十四・三分、東経百二十九度十八・四分の点
- (24) 北緯三十四度五十七・〇分、東経百二十九度二十一・七分の点

제 7 조

1. 각 채약국은 다음 각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한 자국 속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며, 제2조 내자 제6조의 규정의 적용상도 이 수역을 자국의 베타직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

- 가. 북위 32도 57.0분, 동경 127도 41.1분의 점
- 나. 북위 32도 57.5분, 동경 127도 41.9분의 점
- 다. 북위 33도 01.3분, 동경 127도 44.0분의 점
- 라. 북위 33도 08.7분, 동경 127도 48.3분의 점
- 마. 북위 33도 13.7분, 동경 127도 51.6분의 점
- 바. 북위 33도 16.2분, 동경 127도 52.3분의 점
- 사. 북위 33도 45.1분, 동경 128도 21.7분의 점
- 아. 북위 33도 47.4분, 동경 128도 25.5분의 점
- 자. 북위 33도 50.4분, 동경 128도 26.1분의 점
- 차. 북위 34도 08.2분, 동경 128도 41.3분의 점
- 카. 북위 34도 13.0분, 동경 128도 47.6분의 점
- 타. 북위 34도 18.0분, 동경 128도 52.8분의 점
- 파. 북위 34도 18.5분, 동경 128도 53.3분의 점
- 하. 북위 34도 24.5분, 동경 128도 57.3분의 점
- 거. 북위 34도 27.6분, 동경 128도 59.4분의 점
- 나. 북위 34도 29.2분, 동경 129도 00.2분의 점
- 더. 북위 34도 32.1분, 동경 129도 00.8분의 점
- 서. 북위 34도 50.6분, 동경 129도 13.0분의 점
- 어. 북위 34도 52.4분, 동경 129도 15.8분의 점
- 자. 북위 34도 54.3분, 동경 129도 18.4분의 점
- 처. 북위 34도 57.0분, 동경 129도 21.7분의 점

| ○ 韓國

相互入会 い措置を い水 い扱 い。

1 次の各点を順次に直線によつ結ぶ線によつて囲めたる水域においては、該屬書一の規定を適用する。

- (1) 次条1に定める水域
- (2) 次条2に定める水域

第九条

相互入会 い措置を い水 い扱 い。

第一条から第六条までの規定は、協定水域のうち次の(1)及び(2)の水域には適用しない。

- (25) 北緯三十四度五十九・六分、東経百一十九度一十一・六分の点
- (26) 北緯三十四度五十八・六分、東経百一十九度一十五・三分の点
- (27) 北緯三十五度一・一分、東経百一十九度三十一・九分の点
- (28) 北緯三十五度四・一分、東経百一十九度四十・七分の点
- (29) 北緯三十五度六・八分、東経百三十度七・五分の点
- (30) 北緯三十五度七・〇分、東経百三十度十六・四分の点
- (31) 北緯三十五度十八・一分、東経百三十度二十三・三分の点
- (32) 北緯三十五度三十三・七分、東経百三十度三十四・一一分の点
- (33) 北緯三十五度四十二・三分、東経百三十度四十二・七分の点
- (34) 北緯三十六度三・八分、東経百三十一度八・三分の点
- (35) 北緯三十六度十・〇分、東経百三十一度十五・九分の点

第八条

2 各締約国は、一の線より他方の締約国側の協定水域において漁業に関する主権的権利を行使しないものとし、第二条から前条までの規定の適用上もとの水域を他方の締約国の排他的経済水域とみなす。

- 2. 각 협약국은 제1항의 선에 의한 타방제약국측의 협정수역에서 이법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며,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의 적용상도 이 수역을 타방제약국의 배타적 경계수역으로 간주한다.

제 8 조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협정수역중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수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
- 나. 제9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

제 9 조

1. 다음 각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차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수역에 있어서는 부속서 I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1) 北緯三十六度十・〇分、東経百三十一度十五・九分の点
 (2) 北緯三十五度三十三・七五分、東経百三十一度四十六・五分の点
 (3) 北緯三十五度五十九・五分、東経百三十一度十三・七分の点
 (4) 北緯三十六度十八・五分、東経百三十一度十三・七分の点
 (5) 北緯三十六度五十六・一分、東経百三十一度五十五・八分の点
 (6) 北緯三十六度五十六・一分、東経百三十五度三十・〇分の点
 (7) 北緯三十八度三十七・〇分、東経百三十五度三十・〇分の点
 (8) 北緯三十九度五十一・七五分、東経百三十四度十一・五分の点
 (9) 北緯三十八度三十七・〇分、東経百三十一度五十九・八分の点
 (10) 北緯三十八度三十七・〇分、東経百三十一度四十・〇分の点
 (11) 北緯三十七度三十五・五分、東経百三十一度四十・〇分の点
 (12) 北緯三十七度八・〇分、東経百三十一度三十四・〇分の点
 (13) 北緯三十六度五十一・〇分、東経百三十一度十・〇分の点
 (14) 北緯三十六度五十一・〇分、東経百三十一度十一・五分の点
 (15) 北緯三十六度十・〇分、東経百三十度三十一・五分の点
 (16) 北緯三十六度十・〇分、東経百三十一度十五・九分の点

2 次の各線によって囲まれる水域であつて、大韓民国の排他的經濟水域の最南端の緯度線以北の水域におけるは、附屬書一の3の規定を適用する。

- (1) 北緯三十一度五十七・〇分、東経百三十七度四十・一分の点から北緯三十一度三十四・〇分、東経百三十七度九・〇分の点を結ぶ直線
 (2) 北緯三十一度三十四・〇分、東経百三十七度九・〇分の点から北緯三十一度〇・〇分、東経百三十五度五十一・五分の点を結ぶ直線
 (3) 北緯三十一度〇・〇分、東経百三十五度五十一・五分の点から始まる北緯三十一度五十六・〇分、東経百三十五度五十一・〇分の点を通過する直線
 (4) 北緯三十一度五十七・〇分、東経百三十七度四十・一分の点から北緯三十一度三十一・〇分、東経百三十七度三十一・〇分の点を結ぶ直線
 (5) 北緯三十一度三十一・〇分、東経百三十七度三十一・〇分の点から始まる北緯三十一度〇・〇分、東経百三十七度五・〇分の点を通過する直線

2. 다음 각목의 선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최남단의 위도선 이북의 수역에 있어서는 부속서 I의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북위 32도 57.0분, 동경 127도 41.1분의 점과 북위 32도 34.0분, 동경 127도

9.0분의 점을 연결하는 직선

나. 북위 32도 34.0분, 동경 127도 9.0분의 점과 북위 31도 0.0분, 동경 125도 51.5분의 점을 연결하는 직선

다. 북위 31도 0.0분, 동경 125도 51.5분의 점에서 시작하여 북위 30도 56.0분, 동경 125도 52.0분의 점을 통과하는 직선
 라. 북위 32도 57.0분, 동경 127도 41.1분의 점과 북위 31도 20.0분, 동경 127도 13.0분의 점을 연결하는 직선
 마. 북위 31도 20.0분, 동경 127도 13.0분의 점에서 시작하여 북위 31도 0.0분, 동경 127도 50.0분의 점을 통과하는 직선

両締約国は、協定水域における海洋生物資源の合理的な保存及び管理並びに最適利用に関する相互に協力をする。この協力は、当該海洋生物資源の統計学的情報及び水産業資料の交換を含む。

航行、操業の安全
航行、操業の安全

航行、操業の安全

1 両締約国は、それぞれ自国の国民及び漁船に対して、航行に関する国際法規の遵守、両締約国の漁船間の操業の安全及び秩序の維持並びに海上における両締約国の漁船間の事故の迅速かつ迅速な解決のため、適切な措置をとる。

2 1に掲げる目的のため、両締約国の関係当局は、できる限り緊密に相互に連絡し、及び協力をす。

第十一條

1 両締約国は、1の協定の目的を効率的に達成するため、日韓漁業共同委員会(以下「委員会」といへ)を設置する。

2 委員会は、両締約国政府がそれぞれ任命する一人の代表及び一人の委員で構成されるものとし、必要な場合には、専門家で構成される下部機構を設置する」とがわかる。

3 委員会は、毎年一回、両国で交互に開催するものとし、両締約国が合意する場合には、臨時に開催することができる。下部機構が設置される場合は、当該下部機構は、委員会の両締約国政府の代表の合意により、いつでも開催することができる。

1. 양 체약국은 이 협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양 체약국은 각자 자국의 국민과 어선에 대하여 항행에 관한 국제법규의 준수, 양 체약국 어선간 조업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 및 해상에서의 양 체약국 어선간 사고의 신랄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제1항에 열거한 목적을 위하여 양 체약국의 관계당국은 가능한 한 진밀하게 상호 연락하고 협력한다.

제 12 조

1. 양 체약국은 이 협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임명하는 1인의 대표 및 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되는 하부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매년 1회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양 체약국이 합의할 경우에는 임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2항의 하부기구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해당 하부기구는 위원회의 양 체약국 정부대표의 합의에 의하여 언제라도 개최할 수 있다.

양 체약국은 협정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관리 및 최적 이용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 이 협력은 해당 해양생물자원의 통계학적 정보와 수산업 자료의 교환을 포함한다.

韓国との漁業協定

| ○回六

4 委員会は、次の事項に關し協議し、協議の結果を両締約国に勧告する。両締約国は、委員会の勧告を尊重する。

- (1) 第三条に規定する操業に関する具体的な条件に関する事項
- (2) 操業の秩序の維持に関する事項
- (3) 海洋生物資源の実態に関する事項
- (4) 両国の間の漁業の分野における協力に関する事項
- (5) 第九条²に定める水域における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事項
- (6) その他¹の協定の実施に関する事項

5 委員会は、第九条²に定める水域における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事項に關し協議し、決定する。

6 委員会のすべての勧告及び決定は、両締約国の政府の代表の印鑑によるもののみ行は。

第十三条

紛争解決手続

1 1)の協定の解釈及び適用に関する両締約国間の紛争は、まず、協議によって解決する。

2 1)に於く紛争が協議により解決されない場合には、そのような紛争は、両締約国の同意により、次に定める手続に従い解決する。

- (1) いすれか一方の締約国の政府が他方の締約国の政府から紛争の原因が記載された当該紛争の仲裁を要請する公文を受領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要請に応ずる旨の通報を他方の締約国の政府に對して行う。(a) には、当該紛争は、当該通報が受領された日から三十日の期間内に各締約国政府が任命する各一人の仲裁委員³、こうして選定された二人の仲裁委員が当該期間の後三十日以内に合意する第三の仲裁委員又は当該期間の後三十日以内にその二人の仲裁委員が合意する第三の政府が指名する第三の仲裁委員³の三人の仲裁委員から構成される仲裁委員会に決定のため付託される。ただし、第三の仲裁委員は、「

4.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협의결과를 양 채약국에 권고한다. 양 채약국은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한다.

- 가. 제3조에 규정하는 조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에 관한 사항
- 나. 조업질서규칙에 관한 사항
- 다. 해양생물자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 라. 양국간 어업분야에 서의 협력에 관한 사항
- 마.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바. 기타 이 협정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

5. 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결정한다.

6. 위원회의 모든 권고 및 결정은 양 채약국 정부의 대표간의 협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한다.

제 13 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양 채약국 정부의 분쟁은 먼저 협의에 의하여 해결된다.

2. 제1항에서 언급하는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려한 분쟁은 양 채약국의 동의에 의하여 다음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 가. 어느 일방체 양국의 정부가 타방체 양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원인이 기재된 당해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 요청에 응하는 통보를 타방체 양국 정부에 대하여 행할 때에는 그 분쟁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채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그 기간 후 30일이내에 합의하는 제 3의 중재위원 또는 그 기간 후 30일이내에 그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ずれの一方の締約国の国民であつてもならぬ。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회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된다. 다만, 제3의 중재위원회는 어느 일방체의 국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2) いすれか一方の締約国の政府が(1)に定める期間内に仲裁委員を任命しなかつた場合又は第三の仲裁委員若しくは第三国について(1)に定める期間内に合意せなかつた場合には、仲裁委員会は、いすれかの

場合における所定の期間の後三十日以内に各締約国政府が選定する国の政府が指名する各一人の仲裁委員とそれらの政府が協議により決定する第三の政府が指名する第三の仲裁委員をもつて構成される。

(3) 各締約国は、自國の政府が任命した仲裁委員又は自國の政府が選定する国の政府が指名した仲裁委員

に関する費用及び自國の政府が仲裁に参加する費用をそれぞれ負担する。第三の仲裁委員がその職務を遂行するための費用は、両締約国が折半して負担する。

(4) 両締約国政府は、(1)条の規定に基づく仲裁委員会の多数決による決定に服する。

나. 어느 일방체 악국의 정부가 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내에 중재위원회를 임명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제3의 중재위원회 또는 제3국에 대하여 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내에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각 경우에 있어서의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후 30일 이내에 각 세 악국 정부가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회 이들 정부가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회으로 구성된다.

다. 각 세 악국은 자국의 정부가 임명한 중재위원회 또는 자국의 정부가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중재위원회에 관한 비용 및 자국의 정부가 중재에 참가하는 비용을 각각 부담한다. 제3의 중재위원회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은 양 세 악국이 절반씩 부담한다.

라. 양 세 악국 정부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회의 다수결에 의한 결정에 따른다.

第十四条

附属書と 協定の関 係

「」の協定の附屬書Ⅰ及び附屬書Ⅱは、この協定の不可分の一部を成す。

国際法上 の問題と の関係

「」の協定の「かかる規定も、漁業に関する事項以外の国際法上の問題」に関する各締約国の立場を書かれてゐるのみならぬ。

이 협정의 부속서 I 및 부속서 II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제 14 조

第十五条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이 법에 관한 사항과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세 악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韓国との漁業協定

第十六条

協定の批准、発効及び終了

1. 両者の協定は、批准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批准書は、できる限り速やかにソウルで交換されるものとする。
2. 両者の協定は、批准書の交換の日に効力を生ずる。

1. 両者の協定は、その効力発生の日から三年間効力を有する。その後は、いずれの一方の締約国も、両者の協定を終了させる意思を他方の締約国に対し書面により通告する」とがでるべきこと」この協定は、両者のような通告がなされた日から六箇月後に終了し、「そのようにして終了した限り引き続き効力を有する。

1. 이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신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이 협정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정은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 체 의국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체 의국에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은 그러한 통고가 있는 날부터 6월 후에 종료하며, 그와 같이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第十七条

前の漁業協定の失效

千九百六十五年六月二十一日に東京で署名された日本國と大韓民國との間の漁業に関する協定^{大韓民國と日本國との間の漁業に関する協定}は、両者の協定の効力発生の日に効力を失ふ。

以上の証拠として、下名は、各自の政府から正当な委任を受け、両者の協定に署名した。

千九百九十八年十一月二十八日に鹿児島で、ひしょく日本語及び韓国語による本書一通を作成した。

1965년 6월 22일 도쿄교오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이 협정이 발효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8년 11월 28일 가고시마에서 뚱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日本国のために

高村正彦

大韓民国のために

洪淳模

대한민국을 위하여

洪淳模

일본국을 위하여

高村正彦

第十七条

1050

부 속 서 I

1 両締約国は、排他的経済水域の早急な境界画定のため、誠意をもって交渉を継続する。

2 両締約国は、⁽¹⁾の協定の第九条⁽¹⁾に定める水域で海洋生物資源の維持が過度な開發による弊かれにならぬようにするため、次の規定に従い協力する。

(1) 各締約国は、この水域で他方の締約国の国民及び漁船に対して漁業に関する自國の関係法令を適用しない。

(2) 各締約国は、⁽¹⁾の協定の第十一条の規定に基づき設置される日韓漁業共同委員会（以下「委員会」）⁽²⁾における協議の結果による勧告を尊重して、この水域における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漁業種類別の漁船の最高採集隻数を含む適切な管理に必要な措置を、自國の国民及び漁船に対し⁽³⁾。

(3) 各締約国は、この水域でそれぞれ自國の国民及び漁船に実施している措置を他方の締約国に通報するものとし、両締約国は、委員会の自國の政府の代表を⁽²⁾の勧告のための協議に参加せらる⁽⁴⁾。

(4) 各締約国は、この水域で漁獲を行う自國の国民及び漁船による漁業種類別及び魚種別の漁獲量その他の通報された内容に十分配慮する。

(5) 各締約国は、この水域で漁獲をうる自國の国民及び漁船による漁業種類別及び魚種別の漁獲量その他の関連情報を他方の締約国に提供する。

一方の締約国は、他方の締約国の国民及び漁船がこの水域において他方の締約国が⁽²⁾の規定に従い実施する措置に違反している⁽¹⁾とを発見した場合には、その事実及び関連状況を他方の締約国に通報することができる。当該他方の締約国は、自國の国民及び漁船を取り締まるに当たり、その通報と関連する事実を確認して必要な措置をとった後、その結果を当該一方の締約国に通報する。

(1) 各締約国は、⁽¹⁾の水域で他方の締約国の国民及び漁船に対して漁業に関する自國の関係法令を適用しない。

韓国との漁業協定

1. 양 채약국은 배타적 경계수역의 조속한 경계획정을 위하여 성의를 가지고 계속 교섭한다.

2. 양 채약국은 이 협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 해양생물자원의 유지가 과도 한 개발에 의하여 위험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규정에 따라 협력 한다.

가. 각 채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제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채약국은 이 협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법의결과에 따른 권고를 존중하여, 이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어업종류별 어선의 청고조업칙수를 포함하는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조치

다. 각 채약국은 이 수역에서 각자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조치 를 타방제약국에 통보하고, 양 채약국은 위원회의 자국 정부대표를 나무의 헌고를 위한 협의에 참가시킴에 있어서 그 통보내용을 충분히 배려하도록 한다.

라. 각 채약국은 이 수역에서 어획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의한 어업 종류별 및 어종별 어획량 기타 관련정보를 타방제약국에 제공한다.

마. 일방제약국은 타방제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이 수역에서 타방제약국이 나목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 및 관련상황을 타방제약국에 통보할 수 있다. 해당 타방제약국은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을 단속함에 있어서 그 통보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일방제약국에 통보한다.

3. 양 채약국은 이 협정 제9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 해양생물자원의 유지가 과도よう니수된다마,次の規定に従^い協力する。

(1) 各締約国は、⁽¹⁾の水域で他方の締約国の国民及び漁船に対して漁業に関する自國の関係法令を適用しない。

가. 각 채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제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韓国との漁業協定

—〇五一

(2) 各締約国は、委員会の決定に従い、この水域における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漁業種類別の漁船の最高操業隻数を含む適切な管理に必要な措置を、自国の国民及び漁船に対しとする。

(3) 各締約国は、この水域でそれぞれ自国の国民及び漁船に実施している措置を他方の締約国に通報するものとし、両締約国は、委員会の自国の政府の代表を(2)の決定のための協議に参加させるに当たってその通報された内容に十分配慮する。

(4) 各締約国は、この水域で漁獲を行う自国の国民及び漁船による漁業種類別及び魚種別の漁獲量その他 の通報情報を他方の締約国に提供する。

(5) 一方の締約国は、他方の締約国が(2)の規定に従い実施する措置に違反していることを発見した場合には、その事実及び関連状況を他方の締約国に通報することができる。当該他方の締約国は、自国の国民及び漁船を取り締まるに当たり、その通報と関連する事実を確認して必要な措置をとった後、その結果を当該一方の締約国に通報する。

나. 각 체약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어업종류별 어선의 최고조업隻수를 포함한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취한다.

다.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각각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조치 를 타방체 외국에 통보하고, 양 체약국은 위원회의 자국 정부대표를 나목의 결정 을 위한 회의에 참가시킴에 있어서 그 통보내용을 충분히 배려하도록 한다.

라.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이회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의해 어업 종류별 및 이종별 어획량 기타 관련 정보를 타방체 외국에 제공한다.

마. 일방체 외국은 타방체 외국의 국민 및 어선이 이 수역에서 타방체 외국이 나목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 및 관 현상을 타방체 외국에 통보할 수 있다. 해당 타방체 외국은 자국의 국민 및 어선 을 단속함에 있어서 그 통보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일방체 외국에 통보한다.

부 속 서 II

1 各締約国は、この協定の第九条一及び二に定める水域より自国側の協定水域において漁業に関する主権的権利を行ふるものとし、この協定の第一条から第六条までの規定の適用上もとの水域を自国の排他的經濟水域とみなす。

2 各締約国は、この協定の第九条一及び二に定める水域より他方の締約国側の協定水域において漁業に関する主権的権利を行ふものとし、この協定の第一条から第六条までの規定の適用上もとの水域を他方の締約国の排他的經濟水域とみなす。

3 1及び2の規定は、次の各点を順次に直線により結ぶ線より北西側の水域の一部の協定水域には適用しない。また、各締約国は、この水域においては、漁業に関する自国の関係法令を他方の締約国の国民及び漁船に対して適用しない。

- (1) 北緯三十八度三十七・〇分、東経百三十一度四十・〇分の点
- (2) 北緯三十八度三十七・〇分、東経百三十二度五十九・八分の点
- (3) 北緯三十九度五十一・七五分、東経百三十四度十一・五分の点

1. 각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을 기준으로 자국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며, 이 협정 제2조, 제6조의 규정의 적용상도 이 수역을 자국의 배타적 경계수역으로 간주한다.

2. 각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을 기준으로 타방체약국 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며, 이 협정 제2조, 제6조의 규정의 적용상도 이 수역을 타방체약국의 배타적 경계수역으로 간주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의 북 서쪽 수역의 일부 협정수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 있어서는 이법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1도 40.0분의 점
- 나.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2도 59.8분의 점
- 다. 북위 39도 51.75분, 동경 134도 11.5분의 점

韓国との漁業協定

合意された議事録

合意された議事録

日本国政府代表及び大韓民国政府代表は、本日署名された漁業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以下「協定」といふ。)の関係条項に関連し、次の事項を記録するに合意した。

1 両政府は、東シナ海における円滑な漁業秩序を維持するために、緊密に協力する。

2 大韓民国政府は、協定第九条2に定める水域の設定に関連し、東シナ海の一部水域において日本国が第三国との間で構築した漁業関係が損なわれるなどのないよう、日本国政府に対して協力する意向を有する。たゞ、「の」とば、日本国が当該第三国と締結した漁業協定に関する大韓民国の立場を書するものとみなしてはならない。

3 日本国政府は、協定第九条2に定める水域の設定に関連し、大韓民国の国民及び漁船が、東シナ海の他の一部水域において日本国が第三国との間で構築した漁業関係の下で一定の漁業活動を行ふことが可能となるよう当該第三国の政府に対して協力を求める意向を有する。

4 両政府は、協定及び両国がそれぞれ第三国と締結したか、又は締結する漁業協定に基づいて東シナ海における円滑な漁業秩序を維持するための具体的な方策を、協定第十二条に基づき設置される日韓漁業共同委員会及び当該第三国との漁業協定に基づいて設置される類似の委員会を通じて協議する意向を有する。

대한민국 정부 대표 및 일본국 정부 대표는 금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관계 조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기록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1. 양국 정부는 동중국해에 있어서 원활한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진밀히 협력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협정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의 설정과 관련하여, 동중국해의 일부 수역에 있어서 일본국이 제3국과 구축한 어업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일본국 정부에 대하여 협력할 의향을 가진다. 다만 이는 일본국이 당해 세3국과 체결한 어업협정에 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3. 일본국 정부는 협정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의 설정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국민 및 어선이 동중국해의 다른 일부 수역에 있어서 일본국이 제3국과 구축한 어업관계에서 일정 어업활동이 가능하도록 당해 세3국 정부에 대하여 협력을 구할 의향을 가진다.

4. 양국 정부는 협정 및 양국이 각자 제3국과 체결하였거나 또는 체결할 어업협정에 기초하여 동중국해에 있어서 원활한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정 제12조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한·일 어업 공동위원회 및 당해 세3국과의 어업협정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유사한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협의할 의향을 가진다.

千九百九十八年十一月二十八日に鹿児島で

日本国政府のために

高村正彦

大韓民国政府のために

洪淳瑛

협의의사록

一〇四四

1998년 11월 28일
가고시마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를 위하여

ホンスンヨル

高村正彦

(大韓民国の国民及び漁船に対する漁獲割当量に関する日本側書簡)

本大臣は、本日署名された漁業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に言及するとともに、次のとおり申し述べる光榮を有します。

日本国の排他的經濟水域における大韓民国の国民及び漁船に対する漁獲割当量は、外国人が行う漁業の漁獲量に関する日本国の国内法令の規定に従つて、次に示す考え方沿つて毎年決定する意向である。

- 1 スケトウダラの漁獲割当量は、千九百九十九年は一万五千トンとし、翌年以降はゼロとする。
- 2 ズワイガニの漁獲割当量は、千九百九十九年及び翌年は既存の漁獲実績の二分の一とし、翌々年以降はゼロとする。

3 スケトウダラ及びズワイガニ以外の魚種の漁獲割当量の合計は、当該魚種の既存の漁獲実績を基準とし、千九百九十九年から三年で、大韓民国の排他的經濟水域における日本国の国民及び漁船に対する漁獲割当量と等量とする。

本大臣は、以上を申し進めるに際し、ここに閣下に向かつて敬意を表します。

千九百九十八年十一月二十八日に鹿児島で

日本国外務大臣 高村正彦

大韓民国

外交通商部長官 洪淳瑛閣下

韓国との漁業協定

一〇五六

日本側書簡

(協定の規定に反する操業が行われた場合の措置に関する書簡)

(日本側書簡)

本大臣は、本日署名された漁業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に言及するとともに、次のとおり申し述べる光榮を有します。

日本国政府は、日本国の国民及び漁船により前記の協定の規定に反する操業が行われた場合には、日本国との関係法令に従つて厳正な措置をとることにより対処する意向を有している。

本大臣は、以上を申し進めるに際し、ここに閣下に向かつて敬意を表します。

千九百九十八年十一月二十八日に鹿児島で

日本国外務大臣 高村正彦

大韓民国

外交通商部長官 洪淳瑛 閣下

가고시마, 1998년 11월 28일

(訳文)

韓國側書簡

本長官は、本日署名された漁業に関する大韓民国と日本国との間の協定に言及するところに、次のことおり申し述べる光榮を有します。

大韓民国政府は、大韓民国の国民及び漁船により前記の協定の規定に反する操業が行われた場合には、大韓民国の関係法令に従つて厳正な措置をとることにより対処する意向を有してくる。

本長官は、以上を申し進めるに際し、いに闇下に向かつて敬意を表します。
千九百九十八年十一月二十八日に鹿児島で

각하,

본 장관은 금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언급함과
아울러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민 및 어선에 의하여 상기 협정의 규정을 위반하는 조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대처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

본 장관은 이상을 말씀드림에 있어 각하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大韓民国

外交通商部長官 洪淳瑛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홍순영

日本国外務大臣 高村正彦閣下

일本国 외무大臣
고무라 마사히코 각하

(参考)

この協定は、両国について平成八年に発効した国連海洋法条約の趣旨を踏まえ、日韓両国間に新たな漁業関係を確立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自国の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海洋生物資源の管理のためにとる措置等について定めたものであり、昭和四十年六月二十二日に署名された韓国との漁業協定（昭和四十年二国間条約集及び条約集第一五九三号参照）に代わるものである。